

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·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도민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실현과 삶의 질 향상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
(안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)
-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추진기구로서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·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 부터 제12조 까지)
-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시설이용자 안전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 사업 등 가입에 대한 기준을 정함(안 제13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동기 및 필요성

-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('07.12.14.)에 따라 종전에 교육감이 수행하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등 평생교육 관련 일부 사무가 도지사의 사무로 변경되어, 지역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진흥사업 추진 등 도지사의 평생교육 관련 사무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- 조례 제정의 법적인 근거와 전국 16개 시도중 14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조례 미제정 자치단체(2) : **충북, 전북**

- 다만,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제285회 정례회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('09.12.16.)에 상정되었으나, 심사가 보류되어 제8대 의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된 것으로서, 당시 심사보류 사유였던 예산 확보 문제와 도 교육청과의 명확한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
 - 평생교육법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그 기능과 위원의 임기, 운영방식 등을 규정
 - 동법 제20조에 의거 도지사가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종사자 전문성 제고,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

교육 프로그램 운영, 학습계좌제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를 정하였으며,

-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본 조례안의 내용은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평생교육진흥 사무 추진을 위해 지역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 -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,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,
 - 현재 도내에 운영중에 있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각종 연계사업의 경비 지원 관련 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

붙임 1)

타 시 · 도 조례제정 현황

< 2011. 1. 18 현재 >

시 · 도	인원	조 직	시 · 도 평생 진흥원 지정	조례제정 여 부
서울시	32	1국 3담당관 7팀(학교지원 3팀 18명, 평생교육 3팀 11명, 교육협력 1팀 3명)	미 정	09. 3. 18
부산시	14	교육협력관 3팀 (교육지원 7, 인재양성 4, 평생교육 3)	출연기관 위탁예정	09. 2. 4
대구시	13	교육학술팀 2담당 (교육학술 6, 교육지원 7)	소속기관 위탁예정	09. 5. 11
인천시	19	1담당관 3팀 (교육지원 9, 대학지원 4, 평생교육 6)	미 정	09. 10. 12
광주시	15	1과 2팀(인재육성 5, 교육협력 10)	소속기관 위탁예정	10. 10. 1
대전시	9	1담당관 2팀(교육협력 6, 평생교육 3)	설립 진행 중	08. 12. 26
울산시	10	1담당관 2팀(교육협력 6, 평생교육 4)	RHRD센터 위탁예정	09. 10. 16
경 기	49	1국 3과 9팀(교육정책 21, 교육협력 9, 평생교육 18)	미 정	09. 10. 5
강 원	5	교육협력팀 5명	소속기관 위탁예정	09. 9. 25
충 남	9	1담당관 2팀(교육협력 6, 평생교육 3)	미 정	08. 10. 30
충 북	5	교육지원 5명	미 정	제정 예정
전 북	14	1과 3팀 (인재양성 6, 학력지원 4, 학교급식 4)	소속기관 위탁예정	제정 예정
전 남	5	교육지원 5명	미 정	09. 2. 5
경 북	9	1과 2팀(인재육성 5, 학교지원 4)	소속기관 위탁예정	09. 3. 9
경 남	5	교육지원 5명	산하기관 별도 설치	08. 12. 31
제 주	9	1과2팀(인재양성 5, 평생교육 4)	산하기관 별도 설치	09. 3. 18